

2026년도

양평형활력일자리(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본 지침은 2026년 양평형활력일자리(공공근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것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침에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025. 11.

양 평 군
(일자리경제과)

목 차

제1장 양평형활력일자리(공공근로)사업 개요	1
제2장 신청자 접수	3
제3장 대상자의 선발	7
제4장 예산의 집행	11
제5장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12
제6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17
제7장 사업의 지도·감독	20
제8장 행정사항	28
【붙임 1】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붙임 2】 읍·면별 부서 현황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4~6】 일모아시스템 마이데이터 서식	
【붙임 7】 급여 현금수령 신청서	
【붙임 8】 급여 현금수령 확인증	
【붙임 9】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붙임 10】 보안서약서	
【붙임 11】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붙임 12】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재직증명서	
【붙임 13】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붙임 14】 포기신청서	

제1장 양평형활력일자리(공공근로)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가.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공공부문의 사업지원을 통하여 양평군 공공일자리 창출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 나. 본 지침은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 다. 양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라.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 2026. 1. ~ 12. (연 3단계 운영, 단계별 약 3개월)
- 나. 예 산 액 : 금1,595,103천원 (군비 100%)

○ 연도별 예산현황(2024 ~ 2026)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액(천원)	1,223,480	1,350,961	1,595,103
최저시급(원)	9,860	10,030	10,320

- 다. 목표인원 : 360명

라. 참여자 모집 및 사업기간 : 3단계 운영 / 단계별 120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모집기간	'25. 11. 24. ~ 11. 28.	'26. 3. 23. ~ 3. 27.	'26. 7. 27. ~ 7. 31.
사업기간	'26. 1. 2. ~ 3. 31.	'26. 5. 2. ~ 7. 31.	'26. 9. 2. ~ 11. 30.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 및 인원 변동 가능

4 사업분야

가. 사업선정방향

- 단순행정보조 지원사업
-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 환경정비사업
- 기타사업

※ 단순노무사업 후순위 편성

나. 사업의 분류

사 업 군	세부 사업 내용(예시)
단순행정보조	- 행정업무 보조·지원 - 각종 행정전산화 사업 등
공공서비스지원	- 공공기관 단순 지원 업무(도서관 도서관리, 민원안내 등) - 각종 보조 사업(장애인 복지시설 보조, 노인복지시설 보조) - 사회복지 업무지원(아동 청소년·노인 돌봄), 행정실태조사 등
환경정비사업	- 공원, 관광지 등 환경정비 - 하천, 도로변 등 환경정비 - 전통시장 환경정비 -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등 - 불법광고물 정비 - 꽃길조성 및 단순식재 조성
기타사업 (지역특화사업)	- 양평군 특화사업, 자체 필요한 사업

다. 고위험군의 특수업무는 제외될 수 있음.

제2장 신청자 접수

1 신청자격

가. 각 단계별 사업참여 공고게시일 기준 18세 이상인 양평군민

- 1) 미취업인 자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 단, 직전 단계 참여자 중 연속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는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신청 가능
 -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보완 요청(휴업 혹은 폐업)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배제
- 2)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법상 세대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주민등록법상 세대 기준, 동거인 포함)
 - ※ 일모아시스템 조회를 통해 판단

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 1)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 *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가능
- 2)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5) 직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 ※ 단, 질병(7일 이상의 입원이나 14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시),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 포기는 제외
- 6) 최근 6개월 내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 도중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7)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 8) 직전 단계 근로일수 80% 미만인 자
- 9)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제출자

2 연속 참여 제한

가. 연속 2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참여 배제

1) 연속 2단계 참여자에 대한 원칙

가) 연속하여 2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는 다음 단계 사업의 참여를 배제하나 다음 해당자는 단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각 단계사업의 마지막 달 신규 참여자

○ 사업시행기관의 사정(중도 포기자 대체 충원 또는 사업계획의 확대 축소 등)으로 각 단계의 사업 참여 기간이 1월 이하인 자

○ 당해 단계에 실제로 참여한 기간이 1월 이하인 자

나) 연속 2단계 참여자의 다음 단계 배제 이후에는 차후 단계사업부터 다시 연속 2단계까지 참여 가능

3 신청자 접수 기간 설정·운영

가. 단계별 신청자 접수 기간

(1단계) 2025. 11. 24. ~ 11. 28.

(2단계) 2026. 3. 23. ~ 3. 27.

(3단계) 2026. 7. 27. ~ 7. 31.

※ 단계별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 접수 운영

1) 단계별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양평군청 홈페이지 게시, 이장회의, 읍면 직업상담사 홍보 등 미디어 매체 활용

4 신청 구비서류

가.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마이데이터 연계 동의서(접수처에 비치)

- * 【붙임1】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붙임2】 읍·면별 부서 현황
-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4~6】 마이데이터 연계 동의서

나. 기타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점대상 증빙서류(장애인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복지카드 등)

5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가. 주소지 신청원칙

- 1) 이중신청 및 참여자의 적격여부 검색을 위하여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원칙
 - 단, 희망 지역이 주소지가 아닌 경우 희망 지역에서 접수 가능
- 2)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접수 거부 금지

나.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1) 사업참여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 비치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
- 2) 접수시 신청서에 희망지역과 희망사업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안내

다. 신청 자격 확인

구 분	확 인 내 용	확 인 방 법	확 인 자
재산 및 소득 여부	- 세대 기준 소득 및 재산	일모아시스템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총괄담당자
반복 참여 여부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기간 및 횟수	일모아시스템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총괄담당자
기타 확인사항	- 정보제공 동의서의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서명 확인 - 1세대 2인 신청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수급권자 여부 - 각종 가점 요소 적합 여부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여부	읍·면 사무소	읍·면 사무소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담당자

제3장 대상자의 선발

1 선발방법

가.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1) 고려요소의 선택

가) 필수 고려요소: 연령,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나) 임의 고려요소: 취업 취약 계층, 사업참여 횟수, 실업기간, 자격증 등

2)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시 참고사항

가) 재산상황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는 사업 참여를 배제

나) 재산 상황 이외의 기타 고려 요소 중 특정 요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선발순위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

3)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선발 기준표(안)

고 려 요 소	판 단 기 준	배 점(100)	비 고
연 령	35세 미만 65세 미만 65세 이상	20 (20, 10, 0)	주민등록 및 일모아시스템
재 산 (세대기준)	0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20 (20, 15, 10, 5)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결과
소 득 (세대기준, 기준중위소득기준)	65% 이하 65% 초과 ~ 85% 이하 85% 초과 ~ 105% 이하 105% 초과 ~ 125% 이하	20 (20, 15, 10, 5)	일모아시스템 소득조회결과
취업 취약 계층 (중복가점 가능)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각 5 (5, 0) (최대 10)	일모아시스템 조회 및 관련 증명서
사업 참여 (최근 1년 내)	0회, 1회, 2회	10 (10, 5, 0)	일모아시스템 (중도포기자 포함)
실업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0 (0, 10)	일모아시스템
국민취업지원제도 (최근 1년 내)	여, 부	5 (5, 0)	일모아시스템
기타 시.군 판단사항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자격요건 등)	5 (5, 0)	업무 관련 자격증 등

※ 우리군 여건과 실정에 따라 선발 기준표는 조정될 수 있음

나. 고려요소

1) 연령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2)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함

3) 재산상황 : 일모아시스템 조회

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법상 세대 합산 재산 보유액이 4억원 초과자는 사업 참여 배제하고, 재산 보유액별로 차등을 두어 0~20점 가중치 부여

나) 주민등록법상 세대 기준(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부인 경우 포함)으로 판단

*동일주소 내의 신청인은 추가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다) 재산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조회 요청

4) 가구소득

가) 가구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기준

나) 소득조회는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 요청

다) 일모아시스템 소득 기준에 따라 0~20점 가중치 부여

라) 일모아시스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합산

· 근로소득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국민연금 순으로 적용

· 기타소득 : 국세청 사업소득/12 + 국세청 종합소득/12

· 공적이전소득 : 군인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 사학연금소득

※ 일모아시스템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소득 정보가 0원인 경우, 차순위 정보를 적용

마)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일모아시스템 소득조회 결과에 따라 배점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5) **취업 취약계층**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로 해당 증명서 소지자 및 일모아시스템 조회자에 한하여 0~5점 가중치 부여

가) 취업 취약계층 가중치 부여시 중복가점 가능

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6) **사업참여 여부** : 일모아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 확인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와 신규자를 분류하여 참여 횟수에 따라 0~10점 가중치 부여, 참여 횟수가 적을수록 가산점

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 : 일모아시스템 조회

- 사업참여 공고게시일 기준 1년 이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8) **실업기간** : 일모아시스템 확인을 통해 6개월을 기준으로 장기실업자와 미장기실업자로 분류하여 0~10점 가중치 부여
(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실업기간에서 제외)

9) **자격 또는 경력·능력** : 해당 증명서 확인

-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유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나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가중치 10점 부여

다. 감점 요소 (세부 감점사항은 p20 다. 경고 및 징계 참조)

1) 감점 내용

구분	적용 상황	감점	적용 단계	비고
사업 추진 중	참여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경고 조치한 경우	경고 1회당 5점 감점	다음 선발 두 단계까지 적용 / 이후 소멸	경고로 인한 감점은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선발 과정 중	각 사업 단계 선발 과정 중 선발되었으나, 사업 개시 전 포기한 경우	5점 감점	다음 선발 한 단계까지 적용 / 이후 소멸	-

- 2) 경고로 인한 감점은 각 사업 부서에서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내부검토 보고 후 관련 내용을 일자리경제과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담당자에게 공문 발송한 경우 적용함.
- 3) 사용부서의 장이 경고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감점 사실을 해당 근로자 및 일자리경제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참여자 선발절차

- 1) 신청자에 대한 배제 대상자 여부 판단
- 2) 단위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적격 판단
- 3)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공공근로 선발 기준표(안) 참고 (7페이지)
- 4) 단,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동안 담당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임의 배제 가능하며, 이 경우 담당자가 포기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 후 포기신청서 제출할 수 있음
※ 포기신청서 도달 전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배제하지 않음

마. 참여자 선발 시 참고사항

- 1)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참여자 관리
- 2) 특정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 가능

바. 선발자의 근무지 배치

- 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소 인근 사업장 배치
- 각 읍.면별로 선발자를 분류하여 고려요소별 점수 합산 순위 적용
- 2) 희망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다만, 희망사업이 없거나 특정사업에 희망자가 편중되어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전직(前職), 특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참여자 배정 시, 희망자가 없는 경우 미배정될 수 있음
- 3)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음.

제4장 예산의 집행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가. 인건비

- 1) 인건비는 일용임금, 교통·간식비,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참여자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할 수 있음
- 2) 참여자에 대한 교통·간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시 계좌로 일괄지급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주차·연차 수당에는 포함 안됨)
- 3)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로자의 안전 및 방역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 사무관리비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현업업무 종사자가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비 지급 가능
※ 5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제5장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2 임 금

가. 임금의 구성항목

- 1) 평일급여 : (시급 10,320원 × 근로시간) + 교통·간식비 3,000원
- 2) 주휴수당 : 1주 동안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부여
- 3) 연차수당 : 1달 동안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부여
- 4) 공 제 :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

나. 임금의 지급방식

- 1) 임금 지급 : 근로일 익월 10일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
- 2) 임금의 지급은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하되, 신용불량자 등 본인계좌로 임금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일자리경제과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 가능

가) 【붙임7】 현금수령 신청서

나)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채무불이행자명부”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사실 압류통지서
- 법원에서 발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압류계좌 증빙서류 등)

- ※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참여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수령하여야 하며, 현금수령 확인증【붙임8】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금 수령 대상자가 급여일에 현금 수령이 불가할 경우 현금수령 지연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1) 35세 미만 : 주40시간, 65세 미만 : 주25시간, 65세 이상 : 주15시간

※ 단, 연령별 기준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계약 가능

가) 주5일 근무 원칙, 지역여건 및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 요일을 09:00 ~ 18: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연령판단 기준일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 15시간 근무자 중 주5일 3시간이 아닌 주3일 5시간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기타수당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필히 안내하여야 함

나) 초과근무, 야간근무(18:00 이후) 금지

-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근무일 중 대체휴무일을 지정 후 휴일근무 가능

※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평일 임금 적용

나. 주휴·유급 휴일

1)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주휴수당을 지급

<예 시> ○ 근로일 월~금, 주휴일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 주5일 근무 근로자가 5일 전일 휴가 사용 시 → 주휴수당 미지급

- 주5일 근무 근로자가 3일 휴가 사용 시 → 잔여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급)

2)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발생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음

3) 근로자의 날(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처리 방법(=법정공휴일 처리 방법)

①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않음,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150%) 지급

※ 단,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 지급

② (대체)공휴일이 주휴일인 경우: 유급휴일 중복 시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유급휴일수당 지급 않음, 주휴수당 지급),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150%) 지급

③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지급,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150%) 지급

- 5) 지각 및 조퇴로 인한 소정의 근로시간 미준수 및 우천으로 인한 작업 중단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선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휴 및 연차 지급

다. 공가

-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시간은 유급으로 함
- 가) 선거권 및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 나)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 판정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 라)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 양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개정 2022.09.14.> 준용
- 2) 단, 공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공가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사업주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여야 함

라. 병가

- 1) 사업주는 단계별 근로자에게 7일의 범위에서 병가 허가 가능
- 가) 병가의 경우 3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
 - 나) 유급병가 3일을 제외한 무급병가(7일 중 4일)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 미지급 ※ 유계결근과 동일
 - 다) 근로자가 연속하여 3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첨부하지 않을 시, 결근으로 처리)
 - 라) 근로자가 병가일수 7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이후에는 결근으로 처리
 - 마) 병가기간 중의 휴무일 또는 휴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양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개정 2022.09.14.> 준용
- 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병가

- 근로자가 감염병 확진 및 밀접접촉으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판정을 받아 예정된 근무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증빙자료 제출)

마. 개별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1) 작업장 투입 후 재난·재해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가)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 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1일 근무일수가 다를 경우 통상 1일 근무일수의 반을 기준으로 적용

※ 단, 재난·재해 등으로 출근 금지를 사전에 통지(보)하였음에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개인사정 반영금지), 주휴수당은 지급 가능

- 나) 교통비·간식비 전액 지급

2) 결혼,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경조사로 인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경조사일에 대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금과 주차연차수당을 지급 가능하나, 실제 경조사일에 대한 교통비·간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우자	10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바.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1) 사용자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③ 임금에 구성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

2) 사업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붙임9】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참고**

제6장 신청자 및 참여자의 관리

1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가.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이중수혜의 금지

- 1) 일모아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1개월 단위)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자, 이중 수혜자, 부정 참여자를 배제하고 그 결과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전산처리 및 관리
- 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배제 조치 후 명단을 노동관서에 통보
- 나) 직업훈련 참여자 중 수당수급자는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에게 사실통지 후 수당지급을 중단

나.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1)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사업부서)근무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
- 2)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

*【붙임12】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재직증명서

- ※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요구한 서식이 있을 경우는 그 서식으로 대체 가능
- ▲ 경력인정 여부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에서 판단할 사항임
- ▲ 근무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함

2 4대보험 의무 가입 및 취업알선

가. 가입대상

구 분	가입대상	가입제외자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① 17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②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직장가입자)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②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근로자와 사용자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

나.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9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제1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조)
보 험 료 (보수액×요율)	○ 9.5% ·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 건강보험료 7.19% · 근로자 3.595% · 사용자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81% · 가입자부담 50%	○ 실업급여 : 1.8% · 근로자 0.9% · 사용자 0.9%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0.85%(지자체) · 사용자만 부담	○ 0.73% ~ 18.63% (사업장별 기준에 따름) · 사용자만 부담
보험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요양급여 건강검진 출산비 장제비	실업급여 훈련지원 육아휴직급여 구직등록	요양급여 휴업급여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관련 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처리

다. 취득 및 상실신고

- 사업담당자는 모든 참여자에 대해 사업개시 후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라. 안정적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구직활동(상담 등) 실시

- 1) 공공근로 참여자 중 근로능력자는 매 사업단계 참여 기간 중 1회씩 사업장 인근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센터, 채용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구직활동 실시할 수 있음(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에게는 본인 희망 시 제공)
 - 가) 구직활동 시간은 회당 2시간 이내로 하며, 취업상담 및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
 - ※ 단,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리 등을 감안 탄력 조정가능
 - 나) 고용지원센터 현지출장상담이 가능할 경우 취업상담일시, 대상 인원 등을 사전협의하여 현지출장상담 실시
- 2) 공공근로 담당자는 구직활동(상담) 확인서를 확보하여 관리

< 공공근로 참여자 구직활동(상담) 확인서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직활동 내용	비 고

상기인은 ○○에서 구직활동(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장

마. 탈락자, 중도포기자, 사업 종료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

- 1) 실업자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관련 정보 등 적극 안내·제공
- 2)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알선 관련 내용 안내
- 3) 계약기간 종료자 및 취업 외의 중도포기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안내

제7장 사업의 지도·감독

1 사업장 관리

가. 작업 목표량 부여

-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로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작업장 지도·감독

- 1)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2) 현장점검 : 목표량 대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 일일점검으로 미근무자에게 임금 지급사례 방지

다. 경고 및 징계 (양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공무원직 관리규정 준용)

1) 경고

-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 서면상으로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경고 1회당 선발 시 5점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월 3회 이상 무단지각·조퇴·외출을 한 사람 또는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방해 등을 한 사람
-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3회 이상 불복한 경우

2) 징계 : 양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공무원직 관리규정 준용

라. 기타 제재

- 1)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을 금지(당일 사업참여 배제)
- 2) 근무 중 무단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3회 이상 적발시 경고 및 징계

2 안전지도 및 감독

가.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안전교육

- 1) 각 사업부서 담당자 : 사업장별 담당자 사업시작 전 및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가)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 나) 작업장 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 상태 점검방법
- 2) 사업참여자 : 사업시작 전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수시로 교육 실시
 - 안전사고 사례위주로 교육 실시, 참여자의 연령별.사업장 등 재해위험 특성에 맞추어 교육 실시

나. 안전·보건관리자 지정·운영 및 임무

- 1)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운영
 - 가) 안전·보건책임자 : 사업장 안전·보건업무 총괄 감독(각 사업부서장)
 - 나) 안전·보건관리자 : 참여자 안전·보건 관리(각 사업담당자)
- 2)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무: 안전총괄과-1601(2024. 1. 25.)호 관련 공문 내용 발췌
 - 가) 근무시작 및 근무종료 시 근로자 이상유무 확인
 - 나) 작업투입 전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 내용 설명
 - 다) 작업투입 전 작업복·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라)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마)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이행상태 확인
 - 바) 작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
 - 사)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아)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등
 - 사)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다. 사업장 안전관리 요령

1) 안전·보건교육 : 각 사업부서 주관

가) 각 사업부서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단계별 사업 개시 전 2시간 이내 안전교육 실시

- * 참여자 연령별, 사업별,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교육실시
-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에 따른 교육을 시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교육 시간으로 인정 가능

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2)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관리자

가) 사업장·참여자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

나) 작업장 내 위험요인 및 정리정돈 상태 등 점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20조에 의거 매 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참여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1년에 1회 이상)

▲ 채용신체검사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5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재해유형별 상황대처 매뉴얼

구 분	대처방안	비 고
도로변 작업	- 차량 유도자 배치(사업장 공공근로 담당자가 지정) - 안전조끼 착용 필수	개인보호 장구 착용, 작업장별 특성에 맞게 수시 안전교육
장마철	- 바닥청소 청결유지 및 범람우려 지역 출입금지 - 강수량에 따른 작업 속개 및 중지(사업장 공공근로 담당자가 판단)	
폭염	- 여름철 폭염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휴식 시간제(Break Time) 운영 - 야외 작업 시 그늘막 설치	
태풍	- 산사태, 홍수 위험지역 작업 중지	
겨울철	- 방한복 착용, 저체온증, 동상 등 우려시 작업 중지	

3) 안전관리·점검 방법

구분	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			
1단계	작업 시작 전	○ 보호구 이상유무 및 착용상태 확인 ○ 장비, 설비의 이상유무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 근로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확인 ○ 작업장별로 참여자 특성에 맞게 교육 실시	사업장 공공근로 담당자 또는 안전책임자
↓			
2단계	작업 중	○ 작업시간 동안 작업장 수시 순회점검 - 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여부 확인·지도 -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장 주위 유해·위험요소 확인 ○ 도로 주변 작업 시 차량 유도자 배치	“
↓			
3단계	작업 완료 후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현장위험요소 방치여부 확인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확인 ○ 공동 작업용 공구·개인보호 장구 등 회수	“

라.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단 계	대응 요령
평시	■ 비상연락망 구축,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교육 등 ■ 미세먼지 마스크 구비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 이상	■ 온라인 게시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고농도 발생 '나쁨' 상황 (미세먼지(PM10) 81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상황 전파 ■ 야외활동(작업) 자제 ※ 불가피한 활동 시 마스크 지급, 깨끗이 씻기 등
주의보 (미세먼지(PM10) 15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야외활동(작업) 자제 ※ 활동시간이나 활동일자 조정 등 해당일 활동 자제 ■ 실내활동의 경우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경보 (미세먼지(PM10) 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야외활동 금지 ■ 실내활동 시 외부환기를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의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실내업무로 대체할 수 없는 사업장은 미세먼지 경보 이상의 단계가 예상될 경우 휴무(무급)로 하고 추가 근무를 통해 급여를 보전할 수 있다.

마.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1) 폭염특보 발령 시 사업장 노동자 안전 보호 조치



단 계	대응 요령
폭염주의보 (33℃ 이상)	■ 취약시간대인 오후 2~5시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매시간당 10~15분) 시행작업중 15~20분 가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폭염경보 (35℃ 이상)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 공사 중지 등 검토 ■ 2~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 중지하고 휴식

2)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가) 각 부서 관리 사업장별 준비사항

- 언론 등을 통해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확인
- 관리 사업장별 가까운 의료기관 연락처 확인
- 체온계 비치 및 노동자 열사병 등 증상 자주 체크
- 폭염 시 열 노출 최소화 작업일정 사전 계획

나) 폭염주의보 등 특보발령 시 검토사항

- 야외행사 및 활동 자제(금지)
- 장기간 옥외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 또는 일몰 이후 근무로 조정
-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 안전모와 안전대 등 착용 강화

바. 감염병 대응 가이드

- 1)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근무를 중단할 수 있음
- 2) 참여자 중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참여자를 참여 중단시키며,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함
 - 가) 감염병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들을 확인하여 해당 참여자들이 소관 보건소 · 병원 등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 나)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완치를 확인받기 전까지 참여를 금하여야 하며, 감염 우려가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감염병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참여자가 감염병 확진 및 밀접접촉으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판정을 받아 예정된 근무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3) 사업주는 감염병 상황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 방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사.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 착용지도 및 확인 :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작업자에게는 재해 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사전에 올바른 사용법을 철저히 교육

***【붙임13】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참고**

4 정보유출 및 정보의 사적 이용 예방

가. 대상사업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주민등록, 각종 DB구축 등 정보화추진사업, 기타 행정자료 관리업무 등

나.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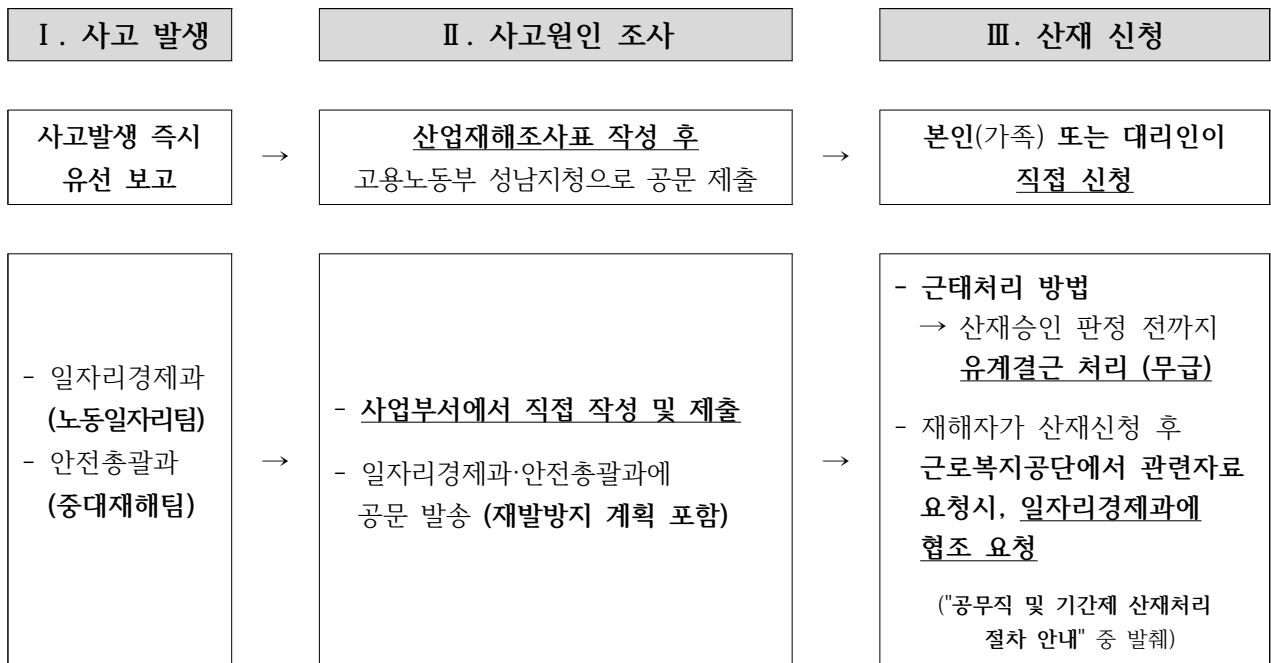
-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 철저

*【붙임10】 보안서약서(표준서식) 참조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교육(매 단계별 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

5 산업재해 처리 절차

[보고 및 처리 절차]



※ 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자가 재해조사 실시 및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일자리경제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자료 요청시 협조하여야 함.

1 사업총괄부서

가. 참여자 선발 및 근무지 배정 : 사업 시작 전

※ 단계별 사업개시 전에는 근무지 변경 배정이 가능하나, 사업개시 후에는 부서간 근무지 변경 불가능하며, 해당사항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나. 각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시작 전

다. 참여자 임금 및 보험료 납부 : 익월 10일 이내

라. 보험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 단계별 개시 후, 사업종료 후

※ 중도포기발생 시 즉시 보험(상실신고)처리

2 사업부서 및 읍·면

가. 사업부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수요조사 :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제출

나. 접수자 명단 제출(읍·면) :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다. 신청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접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라. 참여자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제출 : 단계별 개시 후 15일 이내

마. 참여자 안전 및 보안교육 : 단계별 개시 후 1개월 이내

바. 참여자 출근부 제출 : 매월말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부터 시행한다

【붙임1】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양 평 형 활 력 일 자 리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2025.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핸드폰 번호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제외)	명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 : <u>미취업인 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u>			
희망 읍·면 (필수)	①		②
	※ 인근 읍·면 배정도 가능한 경우 해당 읍·도 작성		
희망 사업	①		②
	※ 뒷장 읍·면별 부서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희망 직종 (택1)	① 현장직 (환경정비, 제초 등)	② 사무직 (행정보조, 민원안내 등)	③ 무관
	※ 희망부서, 사업 및 직종은 참고사항이며, 해당부서, 사업 및 직종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구직등록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장애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실업급여 수급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실업급여 수급 시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에서 배제되나, 수급 중지 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	
비고	※ 사업장 배치 시 참고사항 기재 (ex. 외부활동 불가능, 거동 불편함 등) ▶ _____		

- ① 본 신청서는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 ③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선발은 신청서를 토대로 진행하므로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읍·면별 부서 현황 (예시)

연번	읍·면	사업부서	사업명	수요인원
			총 수요인원	179
1	양평읍 (10개 부서 · 18개 사업 · 43명)	소통홍보담당관	양평군자원봉사센터 내·외부 환경미화 작업	1
2		문화체육과	남한강자전거길 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1
3			문화체육센터 청소 및 환경관리	1
4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정비 사업	3
5			중앙도서관 환경미화	1
6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청사관리 사업	2
7			행복플러스센터 청사관리	2
8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 도움 및 시설관리 사업	2
9			시각장애인경로당 취사원 및 식사보조	2
10			장애인복지관 환경정비	3
11		일자리경제과	양평물맑은시장 환경정화 사업	8
12		보건소	양평군보건소 접수실 청사관리 인력지원	2
13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 사업	1
14		수도사업소	원격검침 관련 민원안내	1
15		양평읍	민원팀 민원 및 행정업무 보조	1
16			복지팀 행정업무 보조	1
17			청결팀 행정업무 보조	1
18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관리요원 운영	10
19	강상면 (2개 부서 · 4개 사업 · 7명)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운영보조	1
20			파크골프장 위생관리	1
21		강상면	강상다목적복지회관 청결유지 사업	1
22			강상면 환경정비 사업	4
23	강하면 (1개 부서 · 3개 사업 · 6명)	강하면	민원팀 민원안내	1
24			강하면 주민자치센터 관리	1
25			강하면 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4
26	양서면 (3개 부서 · 3개 사업 · 16명)	평생학습과	양서친환경도서관 환경미화	1
27		일자리경제과	양수리전통시장 환경정화 사업	3
28		양서면	양서면 환경정비 사업	12
29	옥천면	옥천면	옥천면 관내 환경정비 사업	8
30	서종면	서종면	서종면 환경정비 사업	15
31	단월면 (1개 부서 · 2개 사업 · 15명)	단월면	단월면 환경정비 사업	10
32			명아주 지팡이 재배 관리 사업	5
33	청운면 (2개 부서 · 2개 사업 · 15명)	농업기술과	미래거점단지 조성사업	5
34		청운면	청운면 환경정비 사업	10
35	양동면 (3개 부서 · 4개 사업 · 14명)	평생학습과	양동도서관 환경미화	1
36		일자리경제과	양동쌍학시장 환경정화 사업	2
37		양동면	양동면 환경지킴이 사업	8
38			사회복지 인력지원 사업	1
39	지평면 (4개 부서 · 4개 사업 · 11명)	관광과	구둔역 환경정비 사업	2
40		평생학습과	지평도서관 환경미화	1
41		복지정책과	지평의병 및 지평리전투기념관 청사관리	2
42		지평면	지평면 환경정비 사업	6
43	용문면 (4개 부서 · 4개 사업 · 21명)	관광과	용문산관광지 환경정비 사업	3
44		평생학습과	용문도서관 환경미화	2
45		일자리경제과	용문전통시장 환경정화 사업	4
46		용문면	용문면 환경정비 및 행정보조 사업	12
47	개군면	개군면	개군면 환경정비 및 행정보조 사업	10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1. 이용기관 명칭 : 양평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및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일모아시스템 정보명	이용시스템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
3	재산 및 건강보험료 등 상세내역 재산조회	일모아시스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2026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시 필요할 경우 선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요청하며, 일모아시스템 이의신청등록 재산조회를 통한 본인의 재산 및 건강보험료 등 상세내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참여근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붙임4】 일모아시스템 마이데이터 서식 1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인 정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성명, 참여구분	국세청	소금액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성명, 대상자생년월일, 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기간년월, 기간종년월

제3자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	-----	--

【붙임5】 일모아시스템 마이데이터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붙임6】 일모아시스템 마이데이터 서식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u>주민등록번호</u>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서명)	미동의	(서명)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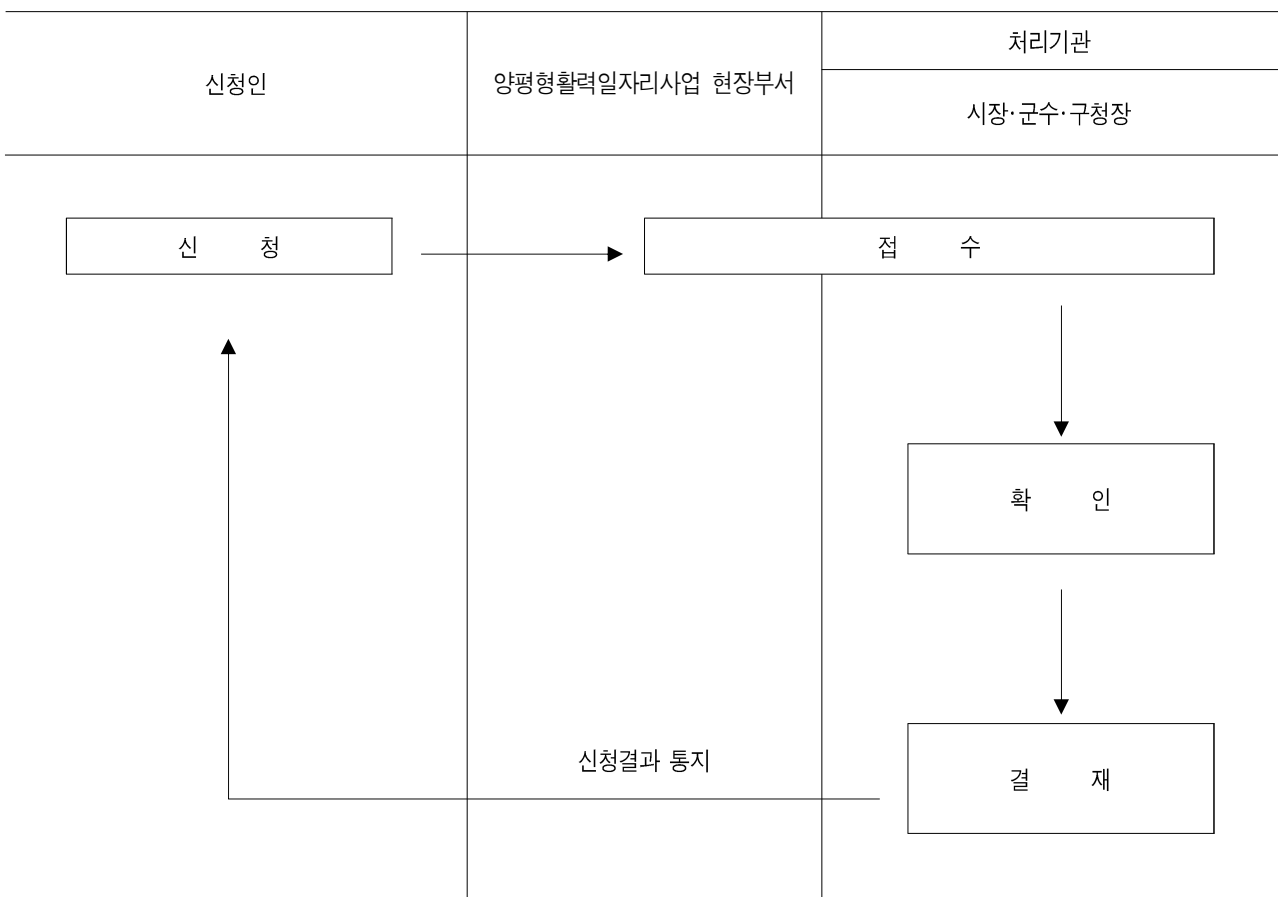
【붙임7】 현금수령 신청서

급여 현금수령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신청사유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대포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현금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급여 현금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자르는 선			
제 호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급여 현금수령 승인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현금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위와 같이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급여 현금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판결문 등) 나. 대표통장 등의 사유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유(금융연합회 공문 등) 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우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 의 사 항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임금은 사업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교 부 용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1월분 급여 현금수령 확인증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 일시 및 수령액	급여 내용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1월 급여					
	수령 일시	2026. . .	수령액	원 (금 원정)			
지급(수령)내역	급여총액	공제내역					실지급여
		공제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공제	

본인()은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1월분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7] 7] 7]

교 부 용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1월분 급여 현금수령 확인증					
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 일시 및 수령액	급여 내용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1월 급여					
	수령 일시	2026. . .		수령액	원 (금 원정)		
지급(수령)내역	급여총액	공제내역					실지급여
		공제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공제	
본인()은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1월분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자 :				(서명 또는 인)			

【붙임9】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1. 양평군수(이하 “사용주”라 함)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근로조건
 - 사 업 명 : 2026년 제1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 계약기간 : 2026. . . . ~
 - 근무장소 : _____
 - 업무내용 : _____
 - 근무일 및 근로시간
 - 근무일 : 주 5일(요일: 월~금요일)
 - 근로시간 : 시 부터 ~ 시 까지 (휴게시간: 시 부터 ~ 시 까지)
(근무시간 ____시간, 휴게시간____) * 휴게시간 상호 협의하며 근무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근무시간은 사업부서에서 09:00~18: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유급휴일
 - 주휴일 :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매주 ()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요일 제외)
***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일 및 휴일을 변경·조정할 수 있음**
 - 임금
 - 기본급(시급) : 10,320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 지급
 - 1일 교통비·간식비 등 부대경비 3,000원 지급 ***근무일에 한함**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 방법 : 을의 통장에 계좌입금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3. 기타 사항
 -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의 참여자에게 **경고 및 징계 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월 3회 이상 무단지각·조퇴·외출**을 한 사람 또는 **월 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방해** 등을 한 사람
 -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3회 이상 불복**한 경우
 - 위에 명시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양평군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지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중도포기자는 다음단계 사업 참여 배제
 - 근로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
 - **사업개시 전에는 근무지 변경배정이 가능하나, 사업개시 후에는 부서간 근무지 변경 불가능**
4. 상기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체결 후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각기 보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년 월 일

사용주 : 양평군수 (인)

근로자 생년월일 : _____

근로자 성명 : _____(서명 또는 인)

【붙임10】 보안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따른 명령에 따른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지키고 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붙임11】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일련번호 : 제 20 - 호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무자 명부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년 월 일 ()
	주소			
	연락처	자택 :	휴대폰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붙임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등 고용에 관한 사항		붙임 : 근로계약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붙임 :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근로계약서
- * 사업장별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근로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붙임12】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재직 사항	④ 소속				
	⑤ 직위·직급				
	⑥ 근무기간			(개월)	
⑦ 용 도 :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위와 같이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양 평 군 수 인사 기록 확인 경기도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287					

【붙임13】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준수사항이며, 동 내용 외에도 작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 대책 수립 추진

□ 공통 사항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29조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세부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조
법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경고, 안내 등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법제38조 1,2,3,4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하역,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토사구축물 붕괴위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법제39조 1,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상의 조치	○사업을 할 때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법 조항	구 분	내 용
법제51조 및 52조	작업중지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사망)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함
법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법제110조 및 부칙 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농약 등)를 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함 -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법제119조	석면조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 등의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함
법제122조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여야 함(석면조사 생략의 경우 포함)
법제132조	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결과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법제138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법 시행규칙 제72,73조	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2026년 제 단계 양평형활력일자리사업 포기신청서

43